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00.00.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평정 실시
(안 제2조, 제3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u>특별 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u>	제2조(적용 범위) ----- <u>지방 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 · 도의회의 의장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제3조(평정 시기) ① · ② (생 략)	제3조(평정 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 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 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u>지방 자치단체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 년으로 하여야 한다.	③ ----- ----- ----- <u>지방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 장</u>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 ② (생 략)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u>----- ----- ----- ----- -----. ④ (현행과 같음)